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5년도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감사기간

2004. 6. 24. (목) [1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마포구의회 사무국

###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구 분        | 감 사 위 원                                                                                         | 대상기관           | 감사장소        | 전문위원  | 사무직원 |
|------------|-------------------------------------------------------------------------------------------------|----------------|-------------|-------|------|
| 운 영<br>위원회 | [위원장] 한 대 운<br>[간 사] 박 지 위<br>[위 원]<br>김 순 금, 남 두 희,<br>신 동 선, 윤 동 현,<br>윤 정 용, 이 종 일,<br>이 천 규 | 마포구의회<br>사 무 국 | 운 영<br>위원회실 | 김 건 재 | 도대오  |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 일 자             | 감사대상부서             | 감사장소        | 감 사 방 법                 | 비 고 |
|-----------------|--------------------|-------------|-------------------------|-----|
| 2004. 6. 24.(목) | 마 포 구 의 회<br>사 무 국 | 운 영<br>위원회실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질의 |     |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2003,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
- 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집행부와의 협의내용
- 국내여비 집행실태
- 의정활동 홍보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0 업무보고자료에 구의회 신청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본회의장 방음과 회의실 배치 등에 있어 구의회 의원 의견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것.
- 0 지방시설물 견학 등 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예산이 미집행 사유로 불용 처리 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독려와 정보제공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0 업무보고서를 구의원에 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와 동봉배부하여 사전에 업무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 나. 처 리 의 견

- 0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서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2004. 6. 22 (화) ~ 2004. 6. 28 (월) [7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0 구 본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 0 동사무소(용강동, 동교동)

### 4. 감사실시 경과

#### 가. 감사반 편성

| 구 분           | 감 사 위 원                                                                                | 대상기관                                               | 감사장소                                        | 전문위원 | 사무직원 |
|---------------|----------------------------------------------------------------------------------------|----------------------------------------------------|---------------------------------------------|------|------|
| 행정건설<br>위 원 회 | [위원장] 신봉현<br>[간 사] 오윤수<br>[위 원]<br>김광섭, 김평전<br>김효철, 남두희<br>박지위, 유남렬<br>유응봉, 전완수<br>정형기 | 감사담당관<br>행정관리국<br>기획재정국<br>건설교통국<br>용 강 동<br>동 교 동 | 행정건설<br>위원회실<br><br>및<br><br>해 당 동<br>사 무 소 | 박관수  | 조용학  |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 일 자                | 감사대상 부서                                       | 감사장소         | 감 사 방 법                     | 비 고 |
|--------------------|-----------------------------------------------|--------------|-----------------------------|-----|
| 2004. 6. 22<br>(화) | 용 강 동                                         | 해 당<br>동사무소  | 증 인 선 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 6. 23<br>(수) | 동 교 동                                         | 해 당<br>동사무소  | 증 인 선 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 6. 24<br>(목) | 감사담당관<br>기획예산과<br>재 무 과<br>세 무 1 과<br>세 무 2 과 | 행정건설<br>위원회실 | 증 인 선 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질의응답 |     |
| 2004. 6. 25<br>(금) | 총 무 과<br>주민자치과<br>문화체육과<br>민원봉사과<br>여 권 과     | 행정건설<br>위원회실 | 증 인 선 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질의응답 |     |
| 2004. 6. 28<br>(월) | 교통행정과<br>교통지도과<br>토 목 과<br>치 수 과              | 행정건설<br>위원회실 | 증 인 선 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질의응답 |     |

## 5.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

| 부 서 별                 |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감 사<br>당 당 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이상 집단 민원 처리 현황</li> <li>○ 공직기강확립 추진 현황</li> </ul>                               |
| 행<br>정<br>관<br>리<br>국 | 총 무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휴양소 이용 현황</li> <li>○ 직원 MT 예산 지원 현황</li> </ul>                                 |
|                       | 주 민<br>자 치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li> <li>○ 동 행정 실적 심사 현황</li> </ul>                         |
|                       | 문 화<br>체 육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의날 행사비 운영 현황</li> <li>○ 체육단체 지원금 현황</li> </ul>                                  |
|                       | 여 권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여권 발급 및 운영 현황</li> </ul>                                                        |
| 기<br>획<br>재<br>정<br>국 | 기 획<br>예 산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 지출현황</li> <li>○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운영 현황</li> <li>○ 각종 기금 운영 현황</li> </ul>          |
|                       | 재 무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도 불용예산 현황</li> <li>○ 2003년도 사고이월 현황</li> </ul>                               |
|                       | 세 무 1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li> </ul>                                                            |
|                       | 세 무 2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li> </ul>                                                           |
| 건<br>설<br>교<br>통<br>국 | 교 통<br>행 정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삿짐 센터 등록 현황</li> <li>○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현황</li> </ul>                                 |
|                       | 교 통<br>지 도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버스 주차장 관리실태</li> <li>○ 세외수입(자동차관련)체납 징수 현황</li> <li>○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li> </ul> |
|                       | 토 목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포구 소방도로 관리현황</li> <li>○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 관리 현황</li> </ul>                             |
|                       | 치 수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관로 정비현황</li> </ul>                                                              |
| 용 강 동<br>동 교 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고 운영현황</li> <li>○ 예산집행 정산서류 및 관리상태</li> <li>○ 관내순찰 및 주요시설물 관리상태</li> </ul>       |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감사담당관

- 0 영리초등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에 포장마차로 인하여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 편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0 사업계획 예산이 미집행, 일부집행, 집행지연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를 철저히 조사 하기 바람.
- 0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 0 전화 친절도는 많이 향상 되었지만 통화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관리국

##### ▣ 총무과

- 0 집단 민원에 대비하여 청사방호 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0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 위탁업체에 대하여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주민자치과

-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대출 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문화체육과

- 0 서울시 사적지인 망원정 관리를 우리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획재정국

### ■ 재무과

- 0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세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세무1·2과

- 0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설교통국

### ■ 교통행정과

- 0 용달약국 사거리 및 우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과 경고등 설치건이 경찰서와 협의된 후 2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 바람.
- 0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있어서 주민파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0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0 이삿짐 센터 등록시 차고지와 사무실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는 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 교통지도과

- 0 우성병원앞에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 0 한겨레 신문사에서 효창공원 사이 일방통행길에 불법주차로 교통이 혼잡하니 주정차 위반 단속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 0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 목표가 저조한데 징수율 향상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 ■ 토목과

-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주변 건물 신축시 공사차량 등으로 보도브럭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처리하기 바람.

#### ■ 치수과

- 연남동 기사식당앞 등 관내 공사하는 구간에 안내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민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용강동

- 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문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미참자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 동교동

- 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문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미참자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나. 건의사항

- 매년 실시하는 동사무소 동정보고시 주민 참석인원을 2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시 LG, 삼성카드만 가능한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시 가능하면 장애인이나 상점주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택가 대문 앞에 설치된 빗물받이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악취등으로 불편하니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다. 처리의견

- 0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건의사항은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함.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 2. 감사기간

2004. 6. 22 (화) ~ 2004. 6. 28 (월) [7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 동사무소 (신공덕동, 대흥동)

###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구 분           | 감 사 위 원                                                                                                             | 대상기관                               | 감사장소                      | 전문위원 | 사무국직원 |
|---------------|---------------------------------------------------------------------------------------------------------------------|------------------------------------|---------------------------|------|-------|
| 복지도시<br>위 원 회 | [위원장] 이 매 숙<br>[간 사] 정 해 원<br>[위 원]<br>김 순 금, 박 영 길<br>송 태 섭, 신 동 선<br>윤 동 현, 윤 정 용<br>이 종 일, 이 천 규<br>한 대 운, 한 수 균 | 생활복지국,<br>도시관리국,<br>보 건 소,<br>동사무소 | 복지도시<br>위원회실<br>및<br>동사무소 | 김건재  | 도대오   |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 일 자                 | 감사대상부서                                    | 감사장소              | 감사방법                      | 비 고 |
|---------------------|-------------------------------------------|-------------------|---------------------------|-----|
| 2004. 6. 22.<br>(화) | 신공덕동<br>대 흥 동                             | 신공덕동사무소<br>대흥동사무소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6. 23.<br>(수)  | 사회복지과<br>가정복지과                            | 복지도시<br>위원회실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6. 24.<br>(목)  | 지역경제과<br>청소환경과                            | 복지도시<br>위원회실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6.25.<br>(금)   | 주 택 과<br>도시관리과<br>건 축 과<br>지 적 과<br>공원녹지과 | 복지도시<br>위원회실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2004.6.28<br>(월)    | 보건위생과<br>지역보건과<br>의 약 과                   | 복지도시<br>위원회실      | 증인선서,<br>업무보고청취<br>및 서류감사 |     |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 < 구 청 >

| 부 서 별            |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생<br>활<br>복<br>지 | 사 회<br>복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현황</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관리실태</li> <li>○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노인병원 보조금 지급현황</li> <li>○ 어린이집 개·보수현황</li> <li>○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에게 지원된 예산집행내역</li> <li>○ 민간보육어린이집 간식비지급현황</li> <li>○ 장애인자립작업장 수탁운영실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li> <li>○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 실적</li> <li>○ 장애인현황 및 관리실태</li> <li>○ 저소득층 사랑의결연사업 추진실적</li> <li>○ 가정도우미 운영실적 현황</li> <li>○ 주택침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실적</li> <li>○ 무의탁 및 독거노인 정기 방문제 운영실태</li> <li>○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li> </ul> |
|                  | 지 국<br>가 정<br>복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실태</li> <li>○ 구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현황</li> <li>○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 종합계획 수립현황</li> <li>○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li> <li>○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실태</li> <li>○ 결식아동급식지원실적 및 지정음식점현황</li> <li>○ 여성단체현황과 활동내역</li> <li>○ 소년·소녀가장 지원실태 및 현황</li> <li>○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li> <li>○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li> </ul>                                                                                                                                                                    |

| 부 서 별                 |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생<br>활<br>복<br>지<br>국 | 지 역<br>경 제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근로자 운영실태</li> <li>○ 물가모니터 운영실태 및 물가정보 이용현황</li> <li>○ 가스·유류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실적</li> <li>○ 마포구 취업정보은행의 효율적 운영방안</li> <l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li> <li>○ 등록대상공장의 미등록현황</li> <li>○ 유망 중소기업 업종 발굴 실적</li> <li>○ 도시가스공사의 주민서비스 실태</li> <li>○ 광견병 예방주사 시약배포 실적 및 운영현황</li> <li>○ 재래시장 재건축등 활성화계획</li> </ul>                    |
|                       | 청 소<br>환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세차장 점검실태</li> <li>○ 폐수처리시설 설치장소 및 단속실적</li> <li>○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li> <li>○ 재활용 판매기금 관리사항</li> <li>○ 청소차량 정비구매 및 유지관리실태</li> <li>○ 생활쓰레기 일일 수거계획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계획</li> <li>○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내역</li> <li>○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현황</li> <li>○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li> <li>○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li> <li>○ 불량정화조 적발 및 조치현황</li> </ul> |

| 부 서 별                 |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도<br>시<br>관<br>리<br>국 | 주택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사업관련 건축허가 현황</li> <li>○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업현황 및 각구 실태</li> <li>○ 사유지내 천막이용 불법가설물 설치현황</li> <li>○ 무허가건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li> <li>○ 항촉판독 심사 및 처리현황</li> <li>○ 주택건설자재 생산업체의 면허내역 및 지도감독사항</li> <li>○ 주거환경지구내 건축허가사항, 사용승인내역</li> <li>○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발경위</li> <li>○ 무허가건물 예방대책</li> <li>○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내역</li> </ul> |
|                       | 도시개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내역</li> <li>○ 상점앞 상품노상적치물 단속실적</li> <li>○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현황</li> <li>○ 현수막게첨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li> </ul>                                                                                                                                                                                |
|                       | 건축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미준공건물 현황</li> <li>○ 건축허가당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li> <li>○ 월드컵공원내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li> <li>○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내역</li> <li>○ 소규모주택 중축신고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li> <li>○ 건축설계사무소 지도·단속 실태</li> </ul>                                                                                                                            |
|                       | 지적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li> <li>○ 새주소사업 면판 보수내역 및 현재 활용내역</li> <li>○ 복잡한 지번 현황 및 사후 조치방향</li> </ul>                                                                                                                                                                                                                 |
|                       | 공원녹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li> <li>○ 가로수 및 공원수목 소득현황</li> <li>○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 및 부적합 약수터 조치결과</li> <li>○ 주요간선로변 가로화분대 관리실태</li> <li>○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중 동별 공급된 수목수와 관리현황</li> <li>○ 공원조성 공사시 구조물설치 현황</li> </ul>                                                                                                                    |

| 부 서 별 |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보건소   | 보건<br>위생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업소 위생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li> <li>○ 식품접객업소의 업태변경에 대한 행정처분현황</li> <li>○ 유흥주점 영업허가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실태</li> <li>○ 퇴·변태업소 및 무허가업소 감시 단속실적</li> <li>○ 식품수거 검사건수 및 행정처분내역</li> <li>○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업소 선정내역</li> <li>○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 실태</li> <li>○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내역</li> <li>○ 의약품 구매실태 및 의료장비운영 현황</li> <li>○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적 및 감염실태</li> </ul> |
|       | 지역<br>보건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실시대상 건물 소독실태현황</li> <li>○ 방역소독관련 동별 약품지급내역</li> <li>○ 보건소에서 실시한 연막, 분무소독현황</li> <li>○ 하절기 방역대책</li> <li>○ 학생결핵검진 실적 및 감염실태</li> <li>○ 결핵, 에이즈 등 전염병 관리현황</li> </ul>                                                                                                                                                                  |
|       | 의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업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실적</li> <li>○ 관내 보건의료파업실태 및 대책</li> <li>○ 어르신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실태</li> <li>○ 건강진단사업 실적</li> <li>○ 성인병환자의 2차검진(안저검사)실적</li> <li>○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실태</li> <li>○ 검진실, 방사선실 운영현황</li> </ul>                                                                                                                                |

## < 동 사 무 소 >

| 부 서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
| 신공덕동<br>대흥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청사 유지관리 실태영</li> <li>○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확인</li> <li>○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li> <li>○ 생활폐기물 대장 및 기한내 수거실적</li> <li>○ 통새계층 발굴 및 지원현황</li> <li>○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접수 관리실태</li> <li>○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li> <li>○ 말끔이봉사단 운영 및 쓰레기봉투 배부실태</li> <li>○ 뒷골목 청소 실태(무단투기, 불법소각등) 확인점검</li> <li>○ 도시가스비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및 문제점</li> <li>○ 환경미화원 출근 등 근무실태</li> <li>○ 보훈가족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li> </ul> |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생활복지국

#### ■ 사회복지과

- 0 망원동 금성노인정 신축예산이 2003년 12월에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 되었음에도 정보수집능력 부재로 2004년 6월 21일 본 대지 관리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금성노인정의 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지여건상 부적합한 장소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대토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노인정 위치로서 적합한 본 토지확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 0 장애인관련 단체 8개단체중 1인이 2개 이상 중복 가입되어 있고 단체별 행사도 유사하여 단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단체별, 행사별로 뚜렷한 기준 없이 일관성 없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유사 장애인 단체를 통합·조정하여 단체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0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상이 65세이상 노인 1,000명(동별 40명), 예산 2,000만원 소요, 공굴리기 등의 운동경기가 있는 행사임. 본 행사는 동별로 노인 40명 동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2,000만원의 소규모 예산으로는 줄속행사가 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공굴리기 운동경기는 경쟁심리때문에 노인에게는 무리가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본 행사를 심도있게 재고하여 전사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 등 기타용도로 전용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독촉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학비를 학교로 직접 송금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취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품새계충을 위해 결연사업 확대와 자원봉사자를 활용 도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람.
- 0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9,000여명인데 사회복지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장애인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서포터즈 등의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가정복지과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시 국립학교는 국가예산으로, 학교 유지관리는 교육청 예산으로, 마포구예산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개방관련 사업, 정보화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부학교에 대한 편중, 이중 지원을 지양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어린이집 대기자중 인근 어린이집에 2중, 3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여성교실 운영 사업중 의류수선, 뜨개질은 구시대 기술로서 현실성이 결여된 교육내용이므로 제과·제빵 등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신기술 교육내용으로 대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학교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종교시설인 경우 특정종교와 관련되는 학습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학부모가 거부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음. 어린이 교육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3년마다 실시되는 어린이집 위탁업체 재계약시 장기계약 위탁업체는 타성에 젖어 어린이집 운영이 돈벌이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모법인(母法人)의 역할과 능력이 초기 계약당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현저히 떨어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업체 선정시 면밀한 검토를 확행하여 계약요건에 못미치는 운영업체는 과감히 재계약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수 어린이집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지역경제과

- 마포구에서 장려·육성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업종 발굴과 투자 기업 유치 등 마포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단계별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고양시」 하면 꽃이 연상되지만 「마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음. 강변북로로 단절되어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잇길과 한강둔치의 난지천공원에 연결통로를 확보하고 한강 난지천공원에서 상암 DMC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코스마련 등 마포구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새로운 구 이미지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민이 이사할 경우, 도시가스 중간밸브 등을 교체할 때 주민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현장직원이 원하는 대로 수리비를 고가로 지불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시 구청에서 지원하는 2,000원 짜리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 15,000원짜리 약을 접종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광견병예방액지원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구청에서 지원하는 약을 접종한 축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고령자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시 우리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관내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액화석유가스판매소내 용기 보관은 업소내에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주차구획선이 없는 도로위의 차량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들이 폭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또한 보도에 고무판을 깔고 작업을 하여 눈·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보행인들의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됨. 이 사항은 매년 반복 지적사항임. 앞으로는 용기를 업소내 보관하고 작업 후 고무판을 제거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재 우리 경제는 체감경기가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실정임.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물가모니터가 수집한 물가정보를 시장별, 주요 품목별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의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교동 소재 영진시장은 주상복합건물로 주차문제 등이 심각하여 시장기능이 저하되어 운영이 어려운 실태이므로 환경개선사업 대상 적정여부 검토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람.
- 영리목적이 아닌 마포희망시장은 운영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하여 계속 추진에 문제가 있음. 향후 사업의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효과가 미진할 경우 유럽의 경우처럼 중고품 전문시장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여 마포명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 청소환경과

- 수돗물은 음용이 가능함에도 실제로 수도관노후와 물탱크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정수과정이 없이 음용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임. 저수조 청소실시 대상업체 중 관내 초·중·고 학교가 47개교인데 이중 중·고가 함께 위치하고 있는 2개교를 제외해도 감사자료의 37개교와 비교하면 학교마저도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수도사업소로부터 저수조청소관리업무가 이관된지 2년 이상이 경과 되었음에도 청소대상업체가 마포 관내에 361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에서 누락된 업체가 많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임. 저수조 청소실시 업무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쓰레기 일일수거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련업무는 일상에서 주민들이 가정이나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본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미집행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쓰레기 일일수거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금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 토요일까지 방치되었다가 월요일에 수거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민원을 제기해도 즉시 처리가 안되므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2004년도 무단투기단속실적이 2003년도 대비 저조한 실적임. 저조한 실적 이유가 무단투기행위의 감소가 아니라면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이라고 판단되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관내 세차장시설의 폐수배출은 환경오염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세차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확행과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바람.
-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의 내용에서 「입지선정 후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와 주민감시단 구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호도해 상암동 현 위치에 쓰레기 소각장을 선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법규정을 내세워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원에 300미터 이내 주민만 참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됨. 앞으로는 주민의 이익과 피해가 민감하게 교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최대이익, 최소피해를 지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도시관리국

### ■ 주 택 과

-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집값을 상회하는 극한의 사례가 있고, 최근 매입한 건물이 수년전 전주인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 항공측량에 늦게 적출되어 현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집행부의 재량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웃에 피해가 없고, 기간이 오래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전주인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현 건물주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년 3회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 우기대비를 위해 점검을 실시 후 조치사항 적출시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는 물론 사후 조치여부를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조그마한 관심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을 관심소홀로 비롯된 인재로 확산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덕1동 경로당 건립관련 예산이 금년 1월 업무보고시에는 3억, 6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시는 3억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소요 예산의 산출은 구민의 혈세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 이와 같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정확한 구 행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지정 등 관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구의원과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고, 사업결정 및 공사시행 경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구의원이 직접 일선 현장에서 사업추진 과정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 도시관리과

- 관내 걷고싶은거리 및 피카소의 거리 주변에 불법현수막, 대리운전 전단지, 상점앞 물건적치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여 도시환경미관 저해 및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어 선진국과 같은 거리 조성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음. 특히 행정공백이 있는 공휴일에는 거리를 보행하는 구민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각고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사장 주변 무단도로점용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금년 부당이득금 부과실적은 5건에 불과함. 이는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건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보행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장주변 무단 도로점용행위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한전서부지점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포장마차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보도를 점용한 채 성업중에 있어 걷고 싶지 않은 거리로 전락해 버려 많은 예산 투자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부서와의 협의하에 포장마차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여유있는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구민에게 필요한 종합 생활정보지함은 개별정보지함의 난립을 막기 위해 보완 제작된 것으로 초기에는 관리상태가 양호했으나 최근에는 녹슬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거리의 흉물로 변해 버렸음.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정보지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기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포장마차는 비위생적 식품조리 행위와 주취자의 노상방뇨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인근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특히 기업형 신발생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마포를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현수막게시대 이용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는 이미 현수막게시대가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 부과 이치에 맞지 않음.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례와 비교하여 우리구도 현수막설치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문제를 법과 논리에 맞게 재고하기 바람.

## ■ 건 축 과

-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차후에는 이러한 미준공 건물이 신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건물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은 세균과 먼지가 가득한 불결한 공기임에도 보도와 인접해 있어 보행자가 유해공기를 흡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주민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
- 상암 DMC내 오피스텔 분양시 공개추첨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로얄층을 배제하고 저층만 공개한다는 소문이 있는 바, 분양승인을 해 준 마포구청이 이를 확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공시설 신축이나 개·보수시 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적인 건축지식 부족으로 설계 등을 할 때에 건축과 영선계를 경유해야 하는데 시급한 공사임에도 예외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 ■ 지 적 과

- 새주소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활용도가 미진함. 관공서부터 우선 시행을 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점차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으로 새주소사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0 성산동 572번지는 구간이 약 3km 되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단일번지를 사용하여 집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거주 주민과의 원활한 협조 하에 편리한 번지체제로의 전환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공원녹지과

- 0 약수터는 주민이 음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 결과 1등급이 판정되더라도 수질악화 가능성이 상재해 있으므로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를 수사·정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부적합 판정시 즉시 폐쇄 조치 하는 등 이용주민이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0 이대전철역사 위에 조성된 염산소공원내 중앙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특성상 예술감이 떨어져 흉물스러울 수 있으므로 조각발침대를 이용한 조각공원화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주민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 구조물과 현수막 게시대는 염산 공원 컨셉과 배치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젊은이의 거리 분위기와 부합되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 0 푸른마포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목을 무상 지원할 때 대상대지의 수목적정량을 파악하지 않고 배부기준 없이 신청한 대로 배부하여 사업효과가 미진한 사례가 있음. 앞으로는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마포로 등 주요간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분대의 화초에 식재후 물 공급 등 관리가 소홀하여 화초가 시들고 화분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바, 구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대문구 홍제천 주변 화분이 부착된 가로등은 도시경관을 살리고 이용주민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있음. 내·외국인 관광객을 정성껏 맞이하고 특화거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가로등에 화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관내 노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마련차원에서 효과가 크므로 본 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인 사업 확대방안을 심사숙고하기 바람.
- 공덕1동내 삼성아파트 주변은 경관이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인근 지역 윗부분은 소량의 수목이 부족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전개하여 정돈이 잘 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해주기 바람.

## 보 건 소

### ■ 보건위생과

- 쓰레기 만두사건 등 끔직한 식품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목욕업소의 수건 위생상태와 욕조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구민의 하절기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관내 이용업소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성실한 업주도 많으나, 특히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퇴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퇴폐업소가 우리관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 선정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잦은 단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대상에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누락 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 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사용 및 냉장 등 보관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단 식중독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방문 및 순회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들 다량 구입하여 유통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약품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지와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후 사용목적이 상실된 사용가능한 장비가 방치되는 일이 없는 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 지역보건과

- 법정전염병은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감시·감독이 소홀하면 전염력이 강하여 구민건강에 타격을 줄 위험한 병이므로 예방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0 건강한 채종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가 동별 안배가 안되어 있고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좋은사업 임에도 구민의 참여율이 낮음. 이것은 홍보부족에 기인된 것이라 판단되니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홍보대상, 홍보매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0 관내에 재건축이 성행하여 많은 공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위생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0 최근에 방역소득방법이 연막소득에서 분무소득으로 가는 추세임에도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아직까지도 분무소득보다는 연막소득이 성행되고 있음. 앞으로 방역활동반에 대한 분무소득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등 단계별·체계적인 방역활동대책을 마련하여 분무소득 위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 0 에이즈는 특성상 환자가 노출을 꺼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전염병임에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실제 발병 환자수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이것은 음성적으로 에이즈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0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이동진료 센터 설치 등 비상시 즉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0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소독대상 건물은 호텔과 같이 대형업체로 이러한 사업장은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소독을 잘 실시하고 있음. 보건소에서 소독대상 제외건물이나 영세업장으로부터 소독대상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접할 경우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을 설명하지 말고 소독은 건물과 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이 실시해야만 청결을 유지하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가급적 소독을 권장하도록 답변을 해주므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마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 의 약 과

- 0 만 65세이상 경로환자를 대상으로 원외약국 약제비를 지원함에 있어 관내 노인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혜폭을 확대시켜 노인의료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0 관내 의원중 주사실이 협소하여 서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동사무소(신공덕동,대흥동)

### 【공통사항】

- 0 환경미화원 출근부에 환경미화원 본인이 날인을 해야 함에도 새벽에 근무지로 직접 출근한다는 이유로 담당직원이 도장을 소지하고 날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앞으로는 업무편리성만 우선 하지 말고 환경미화원 본인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도록 하기 바람.
  
- 0 자활근로사업 등 일일보고 업무와 같이 일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자의 관심도 부족과 직원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동사무소 관리자의 결재가 매일 수행되지 않고, 필요시에 담당직원이 일괄 날인하는 사례가 있음.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제때에 처리하기 바람.
  
- 0 저소득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결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원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교회 등과 같이 후원이 가능한 단체나 개인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람.
  
- 0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동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보훈가족에 대하여 명단을 파악하고 평소 깊은 관심속에 예우를 해주므로써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 신공덕동

- 동청사 민원실내 컴퓨터 관리책임자가 기 전출직원명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대여용 휠체어에는 먼지가 쌓여 있으며, 캐비닛 상단에는 박스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등 사무실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가 불량하여 내방민원인에 불쾌감을 주고 있음. 깨끗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대형폐기물처리대장의 폐기물 접수내역 기재상태는 양호하나 대형폐기물이 기간내 처리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음. 접수대장에 처리결과 확인란을 추가하여 수거결과까지 점검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형폐기물이 노상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아파트지역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보다 평상시에 주변청소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말끔이 봉사단에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를 거주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통별 균등 배부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므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차등 분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활용율을 제고하기 바람.
-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도시가스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당일과 같이 창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어 빗어지는 결과라고 판단되니 도시가스 과다사용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

- 통세계종인 조건부수급자가 9세대에 불과한 것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신청자만 관리하는 피동적 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우리 정서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노출을 감추는 경향이므로 복지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이해하나 근로능력은 있는데 직업이 없는 세대를 동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금년 현재 11건에 불과한 사유가 무단투기횟수가 줄어 든 것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단속의지 약화도 하나의 이유라고 판단됨. 구의회 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의식변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기 바람.
- 주민자치사업중 방과후 교실운영은 어려운 세대의 맞벌이부부나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임. 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관내 사회복지재단과 연계를 더욱 더 강화하여 본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나. 건의사항

### ▣ 사회복지과

- 마포구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각 직능단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을 한 보훈가족에게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동별 1개 정도 걸어놓은 것 외에 뚜렷한 지원실적이 없음. 앞으로는 구·동이

연계하여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 ■ 보건위생과

0 관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시 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고 단속에 비협조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음. 단속반 편성시 단속반원의 신분보호와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마포경찰서와 협조하여 경찰관도 동참하도록 하기 바람.

0 보건소역할에 대해 홍보할 경우 진료부문에 치중하여 지역의료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예방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구민의 건강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니 향후 사업방향 결정 및 홍보물 제작시에는 이를 검토 반영하기 바람.

## 다. 처리의견

0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